

의안번호	2200355
의 퇴 인	신영대 의원
회 답 일	2024. 7. 8.
추계번호	24F072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할 경우, 소득세 및 법인세는 2026년 41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6년

(단위: 억원)

	2026	누적	연평균
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(안 제29조의8제7항 신설)	-411	-411	-205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(안 제29조의8제7항 신설)	○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- (공제대상)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중소·중견기업 - (공제율) 대체인력 1인당 중소기업 1,300만원, 중견기업 900만원 - (적용기한) 2025.12.31.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(안 제29조의8제7항 신설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이 2024년 중 통과되어 2025년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하며, 세수 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6년에 발생한다고 가정
 - 2025년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가 2026년에 이루어짐에 따라 세수 효과는 2026년 한 해에 발생한다고 가정
 - 동 조항의 적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
-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하여 다음을 가정
 - 기업규모별 대체인력과 고용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2018~2021년간 대체인력 지원금 수혜사업장수 및 대체인력 수를 기준으로 하되, '우선지원대상기업'을 중소기업으로, '대규모 기업'의 일부를 중견기업으로 가정
 - 현행 고용보험 관련통계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'우선지원대상기업'과 '대규모 기업'으로 구분함에 따라 개정안의 기업규모별 구분(중소기업, 중견기업)과 일치시키기 위한 가정이 필요
 - ※ 우선지원대상기업: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(제조업 500인 이하)
 - 대규모 기업: 상시근로자수 300인 초과(제조업 500인 초과)
 - 대규모 기업 중 중견기업의 비중은 2021년 기준 중견기업 이상 사업체 종사자수 중 중견기업 종사자수의 비중(36.4%)으로 가정
 - ※ 종사자수('21년 기준, 천명): 중견기업 이상 사업체 4,373, 중견기업 1,594¹⁾
 - 다만, 2022년 1월 1일부터 대체인력 지원금의 신규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,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실적은 2021년 실적까지만 추계에 반영
 -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기업 중 세액공제 수혜기업의 비중은 법인세 신고법인 중 최저한세를 초과하는 총부담세액 납부기업의 비중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며, 2022년 기준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 - 법인세 신고법인 중 최저한세를 초과하는 총부담세액 납부기업의 비중('22년): 중소기업 40.4%, 중견기업 52.9%
 - ※ 중견기업은 일반법인의 전체 신고법인 대비 최저한세를 초과하는 총부담세액 납부법인 비중으로 계산

1) 중견기업 이상 사업체 종사자수는 중소기업벤처부의 「중소기업 기본통계」, 중견기업 종사자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「중견기업 기본통계」를 바탕으로 집계

- 상시근로자수 유지법인의 비중은 한국노동연구원의 「사업체패널조사」 7~9차년도 기준 기업규모별 전일제 정규직 근로자가 이전 조사년도 대비 유지된 기업의 비중 평균과 동일하다고 가정
 - 「사업체패널조사」는 사업체의 고용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해 격년별로 집계하는 조사로, 가장 최근 집계된 년도는 2021년 기준(2023년 발표)
 - 2017년 이후 3개 조사년도 평균 전일제 정규직 근로자 수가 유지된 법인의 비중은 중소기업 55.9%, 중견이상 기업 60.2% 수준
 - ※ 2015년(6차년도) 이전 조사는 전일제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업규모별로 집계되지 않음에 따라 이후 조사만 참고하여 집계
- 향후 대체인력 수는 최근 5년(2018~2022년)간 육아휴직 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(6.8%)만큼 증가한다고 가정
 - 2018~2021년간 통계청 「육아휴직통계」의 육아휴직 근로자 수와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수는 0.889의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
 - 2022년 이후 육아휴직 대체인력 수는 육아휴직 근로자 수 증가율 실적 및 2018~2022년간 연평균 증가율만큼 증가한다고 가정
 - ※ 육아휴직 근로자 수 증가율: ('22년) 14.2%, ('18~'22년 평균) 6.8%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육아휴직 대체인력 수 실적 및 전망

- (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인원 전망) 2021년 기준 7,102개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 10,822명을 고용중으로, 향후 대체인력 고용인원은 최근 5년간 육아휴직 근로자 수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추정
- 2018~2023년간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수령한 기업 및 대체인력 수는 다음과 같음
 - 단, 2022년 이후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에 대한 신규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2022년 이후 통계는 반영하지 않음

[표 2]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수령한 기업 현황: 2018~2023년

(단위: 명, 개)

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
대체인력 수	6,344	6,290	8,920	10,822	10,086	6,642
－ 우선지원대상기업	5,375	5,408	7,810	9,608	9,276	6,120
－ 대규모기업	969	882	1,110	1,214	810	522
대체인력 고용기업(사업장) 수	4,096	4,095	5,760	7,102	6,816	4,727
－ 우선지원대상기업	3,936	3,960	5,593	6,957	6,726	4,668
－ 대규모기업	160	135	167	145	90	59

주: 1.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수혜현황을 기준으로 작성

2.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의 신규 지원이 중단되었으며, 이후 발생한 지원금은 2021년 이전 발생한 대체인력의 지연신청 등으로 발생

자료: 고용노동부 제출자료

- 기업규모별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인원 수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현황 및 최근 대체인력 고용인원의 연평균 증가 추이 등을 반영하여 추정
 - － 2021년 기준 육아휴직 대체인력 중 중소기업 고용인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인원을, 중견기업 고용인원은 대규모기업 고용인원에 2021년 기준 중견기업 이상 사업체 중 중견기업의 비중(36.4%)을 바탕으로 산정
 - － 2022년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육아휴직 근로자 수 증가율(14.2%)을, 2023년 이후는 2018~2022년간 육아휴직 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(6.8%)을 반영하여 추정

[표 3]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인원수 추정: 2022~2025년

(단위: 명)

	2022	2023	2024	2025
대체인력 수(전망)	11,507	12,289	13,124	14,015
－ 중소기업	10,972	11,718	12,514	13,364
－ 중견기업	535	571	610	651

주: 1. 2021년 기준 중소기업 대체인력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체인력, 중견기업 대체인력은 대규모 기업 대체인력에 중견기업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수 대비 중견기업 종사자수 비중을 반영하여 산정

2. 향후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인원 수는 2022년은 육아휴직 근로자 수 증가율 실적(14.2%)을, 2023년 이후는 2018~2022년간 육아휴직 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(6.8%)을 바탕으로 추정

(2) 추계방법

- (추계방법)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인원 추정치에 개정안의 공제율, 세액 공제 수혜법인 비중, 상시근로자수 유지기업 비중 등을 반영하여 세수

효과를 추정

- 육아휴직 대체인력 수에 개정안의 기업규모별 1인당 공제액을 반영한 세액공제액 추정치 계산
 - 1인당 공제액: 중소기업 1,300만원, 중견기업 900만원
 - 단, 이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세액공제의 요건(상시근로자수 유지 등)을 감안하지 않은 추정치
- 산출된 세액공제액 추정치에 기업규모별 세액공제 수혜법인 비중 및 상시근로자수 유지기업 비중 등을 반영
 - 기업규모별 세액공제 수혜법인 비중은 2022년 법인세 신고법인 중 최저한세를 초과하는 총부담세액이 존재하는 법인의 비중으로 계산하며, 향후 이 비중이 유지된다고 가정

[표 4] 기업규모별 세액공제 수혜법인 비중: 2022년 법인세 신고 기준

(단위: 개, %)

2022년 기준	신고법인 수(A)	총부담세액 납부법인 수(B)	최저한세 적용법인(C)	비중([B-C]/A)
중소기업	909,669	433,578	66,084	40.4
일반법인 ¹⁾	72,787	39,692	1,188	52.9

주: 1) 중견기업은 일반법인의 신고법인 대비 최저한세를 초과하는 총부담세액 납부법인 비중을 세액공제 수혜법인 비중으로 사용

자료: 국세청, 「2023년 국세통계연보」, 2023.12.

- 상시근로자 유지기업 비중은 한국노동연구원의 「사업체패널조사」 7~9차년도(2017~2021년)의 기업규모별 전일제 정규직 근로자가 이전 조사년도 이상 유지된 기업의 평균비중으로 계산하며, 향후 이 비중이 유지된다고 가정

[표 5] 상시근로자 유지법인 비중: 사업체패널조사 7~9차년도

(단위: 개, %)

	중소기업			중소기업 외 ¹⁾		
	전체기업 (A)	상시근로자 유지기업(B)	B/A	전체기업 (A)	상시근로자 유지기업(B)	B/A
7차년도(2017)	1,730	929	53.7	1,031	583	56.5
8차년도(2019)	1,500	930	62.0	951	624	65.6
9차년도(2021)	1,495	777	52.0	916	534	58.3
연평균 비중	-	-	55.9	-	-	60.2

주: 1)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의 법인 중 전일제 정규직 근로자가 이전 조사년도 이상 유지되는 기업의 비중으로 계산
자료: 한국노동연구원, 「사업체패널조사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인원 추정치와 공제율, 세액공제 수혜 법인 비중, 상시근로자수 유지기업 비중 등을 반영하여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이 추정

[표 6]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: 2026년 기준

(단위: 억원, %)

	대체인력 수 ¹⁾ × 1인당 세액공제액(A)	세액공제 수혜법인 비중(B)	상시근로자 유지법인 비중(C)	세수효과 (A×B×C)
중소기업	1,737	40.4	55.9	392
중견기업	59	52.9	60.2	19
계	—	—	—	411

주: 1) 육아휴직 대체인력 수는 2025년 추정치 기준으로, 본문의 표는 중소기업 1인당 1,300만원, 중견기업 1인당 9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수치임

(3) 추계결과

-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할 경우, 소득세 및 법인세는 2026년 41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6년

(단위: 억원)

	2026	누적	연평균
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(안 제29조의8제7항 신설)	-411	-411	-205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